심청재활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으로 치매,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2. 이용시간

분 류	서비스 시간	총 제공시간
평일 (월~금)	08:30~17:3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토요일 운행 (일요일 휴무)	08:30~17:3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3.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보호자 신분증 (필요시)
- 현재 복용하는 약 처방전
- 현재 질병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필요시)

4. 이용절차

심청재활노인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상담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이용결정 ▶ 서비스계약체결 ▶ 서비스제공

5. 2023년도 비용안내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월 한도액(원)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5-1 2023년도 주야간보호 이용수가

구 분	시 간		수 가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등급	일반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 경감 및 의료수급권자 : 40% ➔ 9% , 60% ➔ 6% 부담

5-2. 월 이용료

- 서비스 발생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요일 및 휴일, 야간 급여를 이용하시면 가산이 적용되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실비의 경우, 25,000원으로 한다.(중식비만 포함, 석식은 별도)**

5-3.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5-4. 기타비용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이용자측에서 전액부담한다.
-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 체결한 이용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이용자측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평일 5**일에 대하여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납부한다.

5-5. 비급여 내용

비급여 항목	비용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2,500원/한끼당
이, 미용비	자원봉사 활용
병원진료비, 약제비, 개인물품 등	월별로 본인부담금 명세서 우편 발송

6. 운영일정표

<table>
<tr><th colspan="2">요일
시간</th><th>월</th><th>화</th><th>수</th><th>목</th><th>금</th><th>토</th></tr>
<tr><td colspan="2">08:30~09:30</td><td colspan="6">어르신 활력징후 체크 및 손 소독 (어르신 상원)</td></tr>
<tr><td colspan="2">09:30~10:00</td><td colspan="6">아침조회 및 티 타임</td></tr>
<tr><td colspan="2">10:00~10:20</td><td colspan="6">심청재활 건강 체조 및 프로그램준비</td></tr>
<tr><td rowspan="2">오전집단프로그램</td><td rowspan="2">10:20
~
11:30</td><td>인지PG</td><td>신체PG</td><td>신체PG</td><td rowspan="2">목욕</td><td>신체PG</td><td>신체PG</td></tr>
<tr><td>내부
프로그램</td><td>슬링 운동</td><td>내부
프로그램</td><td>내부
프로그램</td><td>내부
프로그램</td></tr>
<tr><td colspan="2">11:30~12:00</td><td colspan="6">구강운동 및 위생관리 / 식사 준비</td></tr>
<tr><td colspan="2">12:00~12:30</td><td colspan="6">점 심 식 사</td></tr>
<tr><td colspan="2">12:30~13:00</td><td colspan="6">위 생 관 리 / 투 약 관 리</td></tr>
<tr><td colspan="2">13:00~14:00</td><td colspan="6">휴식 시간(개인 운동) 및 프로그램준비</td></tr>
<tr><td rowspan="2">오후집단프로그램</td><td rowspan="2">14:00
~
15:00</td><td>족욕</td><td>인지PG</td><td>인지PG</td><td>실버안마</td><td>인지PG</td><td rowspan="2">인지활동</td></tr>
<tr><td>신체PG
내부
프로그램</td><td>최주형
(시니어
여가문화)</td><td>지화숙
(노래교실)</td><td>내부
프로그램</td><td>이승복
(뇌건강)</td></tr>
<tr><td colspan="2">15:00~15:30</td><td colspan="6">간식시간 및 위생관리</td></tr>
<tr><td colspan="2">15:30~16:00</td><td colspan="6">TV 시 청 및 휴 식</td></tr>
<tr><td colspan="2">15:30~16:00</td><td colspan="6">맨손체조 및 걷기운동, 개인위생관리</td></tr>
<tr><td colspan="2">16:00~16:10</td><td colspan="6">구강운동 및 위생관리 / 식사 준비</td></tr>
<tr><td colspan="2">16:10~16:40</td><td colspan="6">저 녁 식 사 / 위 생 관 리 / 투 약 관 리</td></tr>
<tr><td colspan="2">16:40~17:30</td><td colspan="6">하원준비 및 차량탑승 / 차량하원운영</td></tr>
</table>

7.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제공사항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를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 욕구사정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도 이용가능하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급여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합하여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 치매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치된 기관에서만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요양보험제도과>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 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

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 항목별 기준

1)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무료(단 주간보호 기저귀 비용은 본인부담)**
-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 (수급자의 자비 부담)

2)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6) 기타 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1)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2)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3)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함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야간보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등급 (L -)
	생년월일	. .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심청재활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주·야간보호
	대표자 성명	김 현 이 (인)	연락처	054-482-7575 010-7383-1894
	주 소	구미시 선산읍 성황3길 35-4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19 . .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 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평일 이용시간	오전 오후 시 분~ 오전 오후 시 분
공휴일 이용시간	오전 오후 시 분~ 오전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 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토	시간	
공휴일	시간	

④ '을'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 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 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 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 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 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 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 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 (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 에게 통보
4. ‘갑’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을’ 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 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 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 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 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 ~ 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1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02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 은 매월 이용료를 본인부담금 통장인 농협으로 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 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 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 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 은 ‘갑’ 또는 ‘병’ 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 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④ ‘을’ 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 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 은 ‘을’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 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 은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 은 즉시 '병' 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대표자 김 현 이 (서명)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서명)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급여				비급여 등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공휴일 가산 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